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김윤영 (Kim, Yun-young) *

(E-mail : ycmt7@hanmail.net)

이상원 (Lee, Sang-won) **

(won12102@yongin.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9 월 27일

논문심사일 : 2011년 10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0월 28일

-
- * 학위취득대학 : 수원대학교
현직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주저자)
- ** 학위취득대학 : 동국대학교
현직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탈북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국문요약>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소년은 북한체제 및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물며 우울함과 불안감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심하여 외부자극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개심으로 표출되어 일탈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대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보호문제는 통일 이후 함께 해야 할 수백만 명의 북한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제이자, 진정한 남북사회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의 사회정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자산인 탈북청소년이 건전한 통일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북청소년들의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신변보호경찰관의 맞춤형 배치와 의식재고, 업무의 명확화 및 역량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범죄 예방대책 등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신변보호 개선방안들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물론 국민들이 다 함께할 때 가능하다. 그러할 때만이 탈북청소년들이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인 치안활동의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탈북자,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신변보호경찰관

I. 서론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면서 인적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20~30대의 탈북남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탈북여성들이 대다수(70% 이상)를 차지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과 노인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초·중등학교 연령층(10~19세)의 국내입국 탈북청소년들은 2,470명으로 탈북자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1b). 이들은 부모와 함께 또는 단신으로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과 제3국을 길게는 수년간 유랑하다 국내로 입국하지만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족 해체나 사망, 경제적 빈곤, 미래에 대한 불안, 문화적응의 어려움, 정체감 상실, 외로움 등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대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정착지원 문제 즉, 이들의 보호문제는 통일 이후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수백만 명의 북한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제이자, 진정한 남북사회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정착교육을 받고 나면 거주지에 편입함과 동시에 신변보호경찰관(보안경찰)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남한사회 정착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자산인 탈북청소년들이 건전한 통일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정착에 성공할 경우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여 통일시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치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들은 그들이 남한사회와 학교에 적응해야할 주체라는 관

점에서 사회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 그들의 적응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대책을 제안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신변보호경찰관의 보호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¹⁾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국내입국 탈북자들 중 9세에서 19세까지의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착실태와 신변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따른 신변보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의 갈등문제,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들 수 있을 것이다(김윤영 2010a, 3).

II.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1) 탈북청소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시
대환경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듯이²⁾ 북한을 탈출

1) 김윤영이 작성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2007),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2009b), 『국내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2010) 등은 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체계를 다룬 보고서이지만,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탈북자 전체 문제와 관련한 연구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귀순 용사’, ‘귀순자’, ‘월남자’, ‘귀순북한동포’, ‘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주민’, ‘탈북민’, ‘남한이주북한동포’,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자유북한인’, ‘북한탈출

한 청소년에 대한 호칭 또한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북자들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탈북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탈북청소년’이란 북한주민들 중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청소년기 계층’의 탈북자를 의미한다.³⁾

2) 탈북청소년 연령

탈북청소년의 연령층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개별 연구자나 각종 법 규정은 필요에 따라 13~21세, 9~24세, 만25세 미만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⁴⁾ 이 글에서는 통일부가 사용하는 10세 단위의 통계 분류에 따라 1차적으로 9세에서 19세까지로 한정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통계 기준은 구체적인 연령별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한계가 있어⁵⁾ 연령별 통계를 제공하는 교육과학기술기

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어 오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하였다. 1997년 1월에 제정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2007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4)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13세에 21세(이기영 2000), 9세에서 24세(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로 규정하기도 하며, 탈북청소년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령 규정을 유보(길은배·문성호 2003)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5조 1항은 교육지원 대상을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소년법」은 만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민법」은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각각 규정하는 등 통일된 명칭이나 연령규정이 없다.
- 5) 통일부 통계는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

술부의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파생된 결과 탈북청소년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학업 결손으로 인해 남한의 동급생보다 2~5세까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25세까지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신변보호경찰관

신변보호경찰관이란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게 되면 신변보호 경찰관서장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이하 신변보호지침)⁶⁾에 따라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정한 담당 보안경찰관을 의미한다(동 지침 제3조 3항). 신변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하고 있다.

2. 탈북 과정

1) 탈북 요인

북한 주민들의 탈북원인은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 식량난 등 정치·경제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탈북 시기와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경우는 북한의 1인 독재체제의 탄압을 피하

세 등 10세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탈북청소년의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다.

- 6) 신변보호지침은 1997년 8월 7일 제정하여 2005년 1월 1일 일부 개정된 후, 2008년 6월 9일 전부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최근의 탈북자관련 연구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 못하고 신변보호경찰관을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오기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은 신변보호경찰관서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의미한다(동 지침 제3조 2항).

고자 하는 정치·사상적 동기와 신변안전의 이유가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식량난 등 경제적 동기가 직접적인 탈북 요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출신성분, 체제불만을 토로하다가 생긴 위험과 갈등, 유학중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느낀 북한체제에 대한 회의 등도 이 시기의 탈북원인이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곳에서 살기 위해, 기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증가하기 시작했다(통일부 2011a, 7).

탈북청소년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먹고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였다면,⁷⁾ 2000년 이후부터는 기회의 땅을 찾아 부모와 함께 또는 홀로 탈북을 하고 있다.

결국, 탈북 원인은 어느 한 특정 요인에 있기 보다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얽힌 결과로 과생된 것이다.

2) 탈북 유형

북한 청소년들의 탈북 유형은 부모를 따라 탈북, 단독 탈북, 국내 정착 부모들의 탈북 유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부모를 따라 가족단위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완전탈북에 목적을 둔 부모들은 자녀나 가족을 동반하여 국경을 탈출하면 곧바로 중국 내륙이나 몽골, 태국,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5년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국내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고 있다(이우영·이금순 외 2000, 13-15). 최근에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동반하여 해상을 통해 탈북하여 입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1990년 중반 극심한 식량난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청소년

7) 북한청소년들은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으로 부모가 아사하여 '꽃제비'로 전락한 아동과 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홀로 탈북했다. 북한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유랑걸식 하는 아동들을 '꽃제비'라 지칭하고 있다.

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개별적인 탈북을 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외부문화 유입의 영향에 의한 절도 및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자본주의형 범죄를 자행한 후 처벌을 피하고자 단독으로 탈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김윤영 2009a, 36-37).⁸⁾

셋째, 한국 사회에 먼저 정착한 성인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국내로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은 탈북 전문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에 두고 온 자녀나 가족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

3) 북한 탈출 경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주로 정치적·개인적 문제로 처벌의 두려움을 피해 휴전선과 해상 그리고 도강하여 직접 남하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지역의 국경(북·중, 북·러)지역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하였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탈북 경로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 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만강 북동쪽의 경우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은 결빙으로 인해 비교적 도강하기 쉬운 곳이다. 반면, 백두산은 중국 공안요원의 접근이 쉽지 않는 산악지역이고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국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체포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압록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비도 삼엄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만강이나 백두산 경로에 비해 비교적 탈북 빈도가 낮은 경로라 할 수 있다(김문수 2004, 13). 결

8)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 요인은 출신성분에 의한 정치사회적 차별대우에 따른 사회진출의 좌절, 인격형성의 미비, 과도한 노력동원과 사상학습,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자본주의 확산 등에 있다(김윤영 2009a, 36-37).

국, 북한주민들의 국경 탈출 경로가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경경비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김윤영 2010a, 35-36).

4) 국내 입국 경로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경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휴전선, 강, 해상 등을 통해서 남한에 직접 귀순하여 정착했다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주로 중국으로 탈출하여 한국 및 외국 대사관으로 잠입 후 망명을 신청하거나 선교단체와 탈북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중국을 거쳐 태국,⁹⁾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을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중국에서 여권과 비자를 위조해 해상을 통해 국내로 곧바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¹⁰⁾ 최근에는 중국→베트남 또는 캄보디아 경로를 선호하고 있다. 국내입국 경로를 다양하게 변경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용이성과 해당 정부의 송환 협조 및 언론 보도의 영향 등에 따른 것이다(김윤영 2010a, 36-38).

Ⅲ.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정착실태

1. 신변보호 지원 체계

1)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9) 태국 이민국수용소에는 2007년 11월 현재, 적정 인원 200~300명보다 훨씬 많은 424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된 바 있다(프리존 뉴스 2008.03.27).

10) 2011년 3월 24일 국내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북자 9명이 중국에서 배를 타고 서해상으로 남하해 입국한 바 있다.

탈북자 및 탈북청소년의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10.3.26 일부개정, 이하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7 일부개정, 이하 시행령),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2008.6.9 전부개정, 이하 신변보호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변보호 대상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탈북자(법률 제2조 2)를 의미한다.

2) 신변보호 지정 절차 및 보호 내용

경찰청장은 관계기관(통일부장관)이 거주지 편입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하며(시행령, 제42조), 지방경찰청은 거주지에 편입한 탈북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경찰관서를 지정하고, 신변보호 경찰관서장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도 등급에 따라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들의 신변위해 정보수집, 신변변동 및 범죄가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신변 위해요소 제거 및 위해도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북한 공무원이나 국내 친북세력 등의 보복테러 가능성과 위장탈북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신변보호지침 제9조 1항).

3) 신변보호 경찰관서

경찰청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하 '관할 지방경찰청')을 신변보호 경찰관서로 지정하고, 관할 지방경찰청

장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이하 ‘관할 경찰서’)를 신변보호 경찰관서로 지정해야 한다.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지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판단하여 신변보호 경찰관서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방경찰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를 조정하고, 지방경찰청의 관할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을 조정한다.

신변보호 경찰관서장은 보호대상자가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하고, 효율적인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경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신변보호 과정에서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업무 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신변보호지침 제4조).

4) 신변보호 대상 등급과 보호기간

거주지에 편입된 탈북자의 신변보호 등급은 신변보호 대상자의 북한 경력과 신변위해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및 ‘다급’으로 구분한다. ‘가급’은 재북시 고위직 종사자, 북한의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신변보호경찰관 1명 이상을 배정하여 직접·상시적¹¹⁾으로 보호하고, ‘나급’은 재북시 중요 직책에 종사하여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자와 사회정착 생활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계도가 필요한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신변보

11)직접·상시적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지근거리에서 24시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경찰관 1명을 지정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보호한다.

‘가급’, ‘나급’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신변위해를 당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경찰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급’ 신변보호는 거주지에 전입한 보호대상자 중에서 재복지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신변위해를 당할 우려는 희박하나 초기 사회정착 계도차원에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로 보호기간(5년) 범위 내에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신변보호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탈북청소년 정착실태

1) 탈북청소년 현황

탈북청소년은 성인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탈출행렬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계기로 급증한 후 2000년부터 이들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되면서 탈북청소년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¹²⁾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4월 현재 10세에서 19세의 국내정착 탈북청소년들은 2,470명으로 전체 탈북자(21,191명)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탈북자 대부분은 함경남북도와 양강도¹³⁾ 같은 변방지역에서 탈출한 자들이다.¹⁴⁾ 이들 변방

12) 지난 6년간 국내입국 탈북청소년(6~20세)은 2005년 724명, 2006년 841명, 2007년 1,050명, 2008년 1,319명, 2009년 1,478, 2010년 2,127명으로 매년 증가하여 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1.02.).

13)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탈북자 1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2%가 함경북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70%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08년과 2009년 6~9%에 그쳤던 양강도 출신 탈북자 비율은 36%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헤럴드 경제 2011.09.11).

14) 1990년 중반 극심한 식량난 시기 아사자가 많아 다른 곳에 비해 고아가

지역은 북한 중앙정부의 영향이 덜 미치고 외부의 정보를 들을 수 있어 비교적 도강이 쉬운 두만강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과 중국인 또는 탈북자 사이에서 출생한 호적 없는 2세들을 의미하는 무국적 탈북 아동과 청소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¹⁵⁾ 통일부, 현지인과의 인터뷰, 언론보도, 탈북 지원단체, 개별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¹⁶⁾ 보면 1만 5천에서 2만 명 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연령별 유형(∼'11.4월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명)	829	2,470	5,817	6,729	3,338	1,032	976	21,191
비율(%)	4	12	27	32	15	5	5	100

※ 자료: 통일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 2011.9.15 검색)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수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이 크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많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도강하여 중국으로 탈출했다.

- 15) 중국내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와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는 중국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 무국적 아동과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탈북여성과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 16) 남경필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 수는 최대 1만 5천명에 이르고, 특히 순수 탈북 고아는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은 2008년 자체 입수한 동영상을 통해 국내외 탈북고아 및 무국적 청소년들의 수를 1만 7천명으로 밝힌바 있다(CBS 노컷뉴스 2008.10.06).

2) 탈북청소년 의식성향

탈북자를 비롯한 탈북청소년들은 1인 독재체제 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요구하는 유일사상과 흑백논리의 교육을 통해 학습된 획일적 사고, 공격·비판적 성격, 의식구조의 양면성, 강한 집단 의식, 봉건적 가치 소유, 타인을 비판하는 탁월한 능력 등의 가치체계와 행위규범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우리사회에 편입됨으로써,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몰이해, 자기중심의 이기주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한 사회성과 자립의지 부족, 가족을 두고 온 죄의식 등은 사회정착의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과 중간 기착지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이 국내입국 후에도 심리적 불안감과 정체성을 유발시켜 급우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후 사회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3) 탈북청소년 학교적응 실태

탈북청소년들은 안성시 ‘하나원’에 위치한 ‘하나들학교’에서 소정의 사회적응 기초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하여 주변지역 학교에 편입학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1,573명의 탈북청소년(만6~20세)이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에 있다. 이들 중 초(773명)·중(297명)·고(347명) 정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17명으로 전년(1,143명) 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1.9.5.).

탈북청소년들은 북한탈출과정과 국내입국을 위해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중간기착에서 짧게는 몇 주간 길게는 수 년 동안 불법체류과정에서 학습된 생사를 넘나드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 범죄환경 노출,¹⁷⁾ 학업결손,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김경준 2008, 44-48).

<표 2> 탈북청소년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2010년 4월 기준)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 시설 (전일제)	미수학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0.4)	407	366	166	131	188	159	156 (9.0)	167 (9.6)	1,740 (100)
	773(54.6)		297(20.9)		347(24.5)				
	1,417(81.4)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10년 4월 기준),
전문계고 재학생(‘10.4): 66명(19%).

** 미수학: 6~20세 입국자 수(‘09.11) - 재학생수(정규학교+대안교육시설)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1.9.5 검색).

<표 3> 탈북청소년 연도별 중도탈락률 변화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07년도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580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2.8
‘08년도	‘08. 4. 재학생 수	492	294	180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8.8	14.4	6.1
‘09년도	‘09. 4. 재학생 수	585	298	265	1149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7	9.4	4.9

*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중도탈락자 총수/재학생 총수)×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1.9.5 검색).

- 17) 북한 청소년이 단독으로 탈북하거나 부모와 함께 탈북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가 먼저 국내로 입국하여 중간 기착지에 머무는 동안 의식주 해결을 위해 절도를 하는 등의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2009년도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을 보면, 평균 4.9%로 남한학생(0.94%)보다¹⁸⁾ 5배 이상 높았다. 지난 3년간(2007~2009) 탈북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내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00~'09)간 중도 탈락한 탈북청소년 295명의 사유를 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과 학습능력 부족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부적응 현상이 36.9%(95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타 21.7%(64명), 검정고시 15.6%(46명), 가사 7.8%(23명), 경제적 사정 5.8%(17명), 질병 3.1%(9명), 비행 1.4(4명)% 순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1.9.5). 비행으로 인한 중도탈락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08년 1명에서 '09년 2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나이가 많거나 학습부진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보호나 진로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IV. 탈북청소년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탈북청소년 보호 문제점

1) 신변보호 활동의 이해부족

필자가 몇몇 탈북자와 인연을 맺는 것은 20년이 되어왔지만, 아직도 이들의 의식성향을 이해하기 힘들다. 탈북청소년들은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의 감시와 통제사회에서 습득한 의식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신변보호경찰관이 보호를 위해 파악하는 특이사항이나 신상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자신들을 감시하는 감시행위로 오해하여 불안불신하고 있다. 물론, 국내정착 기간이 길

18) 2009년도 초중고 학생 7,617,796명 중 71,769명이 학업을 중단했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08., 38).

어짐에 따라 그들의 인식은 호전되기도 하나, 적응 초기에는 주로 불안과 불신, 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립의지의 부족, 이기주의, 돌출행동, 경제생활 미숙 등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전우택·윤덕용 외 2001, 213-214).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신변보호경찰관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탈북청소년들이 소기의 정착교육을 마친 후 거주지에 배치되면 일정기간 경찰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남한사회를 보고 접근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명의 탈북자와 한명의 경찰관 사이의 일대일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때로는 두 사람 간에 오해와 긴장,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제성호 1996, 38-39). 이러한 어려움은 신변보호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 역할분담 미흡에 따른 인권침해

정부는 현재 신변보호경찰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탈북자들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추진, 취업보호 대상사업체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김윤영 2010b, 307). 그러나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가 2만 2천명을 넘어섬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거주지 및 취업보호 담당관들의 활동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¹⁹⁾

19) 탈북자가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변보호경찰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 보호담당관체도를 운영하여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전국 233개 각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자 1명을 포함 2명을

그러다보니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거주지 및 취업 업무까지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시접촉으로 인한 매우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즉, 신변보호경찰관은 법규에 의한 지원관리 이외에도 그들의 취업, 결혼,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잦은 접촉을 일부 탈북여성 청소년들은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로 오해하고 있다(박호성 2005, 104).

3) 인력 부족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후원자인 신변보호경찰관은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다. 2011년 8월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는 22,194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변보호경찰관 수는 지난 10년간 7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경찰 1인당 평균 30여명을 보호 지원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또한 신변보호경찰관에 대한 신규 충원 없이 기존인력인 보안수사요원을 차출하여 신변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의 의식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 ‘가급’은 1명 이상 ‘나급’은 1명의 신변보호경찰관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변보호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은 탈북자 보호·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간첩 색출 등의 방첩활동, 중요 죄익사범에 대한 수사, 경호활동 등 사회안전 분야까지 겸직하고 있어 신변보호 업무가 형식적으로 변질될

배정하고 있으며,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산하 55개소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 1명씩을 두고 있다(통일부 2011a, 91-93). 따라서 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거주지 및 취업보호 담당관의 역할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결국, 신변보호경찰관이 탈북자 사회정착 과정의 신변보호로부터 사적인 애로사항까지 해결해 주는 실제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신변보호경찰관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4) 비행 현상의 증가

신변보호경찰관의 임무 중 하나가 탈북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범죄환경을 차단하는데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 잘 융화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수령중심의 일인독재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형성된 상호 감시와 비판의식,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탈북과정에서 형성된 절도 및 폭력성 등의 나쁜 습관이 남아있어 남한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나이와 학력 차이, 정체성 등의 심리적 불안감이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회이탈 현상을 낳고 있다.²⁰⁾ 이외에도 이들은 사선을 넘어 무사히 남한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가시기 전에 문화적 차이와 편견, 자신을 향한 동정어린 눈빛과 외로움, 가난과 향수병 등 다양한 사회적 장애물에 맞닥뜨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범죄의 덫에 쉽게 빠지고 있다.

최근 탈북청소년들 중에서 학교생활을 중도 포기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한 금품 갈취나 절도,²¹⁾ 주민등록증 위조와 해커,²²⁾ 성매매,²³⁾ 집단 패싸움, 자살²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20) 탈북청소년들이 편입학을 할 때 자신의 연령에 비해 낮은 학년 배치나 학력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상이성으로 인한 남한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놀림 등은 자기비하감과 열등감을 낳게 한다.

21) 2003년 입국한 한 촉법 탈북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갈취, 절도, 폭력 행위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 약 13개월 수감되었다. 이 탈북청소년을 담당했던 신변보호경찰관은 자신들의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의 면담, 2009.10.21; 박윤숙 2009, 10-14).

22) 2001년 16살때 단독으로 입국한 양모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국내 9개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다 적발되었다(국민일보 2010.07.21).

이외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탈북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흡연이나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사회에서 음주, 게임 중독,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 행위, 절도나 폭력, 방화 등 다양한 유형의 일탈을 자행하고 있다. 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학교적응은 불가능하며 한 번 일탈행동을 하면 다음부터 쉽게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²⁵⁾ 이러한 범죄행위가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면서 사회불안과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치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탈북청소년 보호 개선방안

1) 신변보호경찰관의 맞춤형 배치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청소년과의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우택(2001)의 “신변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의 관계는 연령, 성별, 학력, 탈출 경로, 종교 등에 따라 서로의 인간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탈북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30대의 신변보호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²⁶⁾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연령, 종교,

23)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위기청소년 실태점검 및 구호활동’을 시행한 결과, 탈북청소년 이모(17)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호된 바 있다(노컷뉴스 2009.01.29).

24) 중학교를 중퇴하고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심모씨(20)는 2009년 6월 자살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9.10.28).

25) 서울경찰청 강서경찰서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 면담, 2010.9.11.

26) 탈북자와 신변보호경찰관과의 관계는 10~20대의 탈북청소년은 30대의 신변보호경찰관을, 40대 탈북자들은 30~40대의 신변보호경찰관을, 50~60대 탈북자들은 50대의 신변보호경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우택 2001, 213).

학력 등과 관련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과 동일한 종교를 가진 신변보호경찰관을 배정하여 종교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탈북과정, 제3국 체류, 국내 정착과정 등에서 종교단체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응의 심리적 측면에서 탈북자들의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 등을 치유할 수 있어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전우택 2001, 167).

2) 신변보호경찰관의 의식 재고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는데, 이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후,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다 국내에 입국한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입국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들의 의식구조는 개인존중, 자유, 박애, 사랑, 봉사, 진실, 성실, 정의 등의 가치관보다는 북한체제에서 습득한 획일적·공격적·폐쇄적·비판적 가치와 집단주의, 투쟁, 비방 등을 더 중요시하는 의식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잔재는 거주지 생활과정에서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변보호경찰관은 감시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변보호경찰관은 자신들의 언행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김윤영·조용관 2009, 184면).

둘째, 탈북청소년과의 접촉을 엄격화해야 한다. 인권침해 논란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직접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변보호 경찰관 역시 탈북청소년과의 관계 속에서 신변보호나 애로사항 청취 명목으로 개별적 접촉과정에서 지나친 온정주의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접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탈북 청소년 보호는 사회일탈예방이나 학교적응 등과 관련한 조언자로서 인간적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독 입국한 탈북 여성 청소년과의 접촉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이 보호 기간 중 필요에 따라 거주지 확인을 위해 방문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김윤영·조용관 2009, 184).

3) 신변보호경찰관 업무의 명확화

탈북청소년 보호담당자 상호간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관련기관에 연결해 주거나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에 국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탈북자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찾아 나서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립심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보호담당자와 기관들도 전문가로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장동수 2006, 80). 즉, 보호담당자 상호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4) 신변보호경찰관 역량 강화

첫째, 신변보호경찰관의 충실한 기본업무와 탈북청소년의 원활한 신변보호 및 사회일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 전담 신규인력

과 예산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외에도 신변보호경찰관의 수당 현실화나 인사 등과 관련한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보안경찰관 중 심리학 전공자나 북한학 전공자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탈북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으로 선발된 자들을 심리학이나 북한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변보호 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찰 교육기관에 별도의 탈북자 ‘신변보호과정’을 개설하여 재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은 우선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탈북자 관리전문화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별로 탈북자 관리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김윤영 2010a, 164-165).

셋째, 탈북자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내입국 탈북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변보호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치안환경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탈북자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가칭 ‘동포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청 보안국 내에 탈북자는 물론 국외거주 동포를 지원·관리하는 1개 과를 신설할 수 있다. ‘동포지원과’에서는 탈북자 관리(1계), 탈북자 합선 및 수사(2계), 재외동포 지원·관리(3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청 내 보안과 내에는 ‘동포지원계’를 신설하고, 탈북자 밀집지역(1,000명 이상) 관할 경찰서에는 보안과 내에 ‘동포지원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동포지원계 내에는 탈북청소년을 상담 지원하는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

5) 탈북청소년 범죄예방

탈북청소년들은 생사를 넘어 남한에 입국했기 때문에 남한사회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남한 사회의 새로운 법이나 사회문화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하나원’에 위치한 ‘하나둘학교’에서 소정의 사회적응 기초 교육을 받지만,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미흡하다. 탈북청소년들의 범죄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법률 강의와 법률상담 외에도 범죄유혹에 대한 ‘역할연기’와 ‘퀴즈대회’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괴롭힘이나 조직폭력배 및 불량청소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혹 등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사기 피해가 빈발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국의 형사법과 탈북자들의 범죄 및 피해 사례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김윤영 2010a, 86).

둘째, 탈북청소년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해야 한다. 탈북자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변보호경찰관서 파출소나 지구대 내에 ‘탈북청소년 컴퓨터’를 개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인탈북자는 물론 탈북청소년들 역시 북한생활에서 보안원(경찰)의 권위적이고 비인권적인 횡포를 경험한 부정적인 잔상 때문에 경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경찰관과의 유대감을 조성함은 물론 경찰체계나 치안환경에 대한 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컴퓨터’ 제공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컴퓨터’에는 생활법률이나 경찰활동 및 치안환경 등의 홍보자료를 통해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모색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나 동영상(문화생활, 영화 등) 자료를 비치하여 우리문화에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쉼터에 오면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윤영 2010a, 87).

셋째,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국내 정착 후 사회일탈을 경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 치안환경의 몰이해에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북한에서 경험했던 나쁜 습관을 빠른 시간 내에 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탈북청소년들은 정체성을 확립하여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래의 통일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전환 동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북청소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동화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남북한 법률과 경찰조직 비교, 치안환경,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동화교육 담당자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나 북한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신변보호경찰관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김윤영 2010a, 87-88).

넷째, 탈북청소년 전담 멘토 지원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일탈 현상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포기한 후 PC방 등을 전전하다가 같은 또래의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직 신변보호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과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로사항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전직 신변보호경찰관을 탈북청소년들의 멘토로 지정하여 방과 후 생활지도 등을 지원할 경우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경찰관의 가중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직 신변보호경찰관들의 활용에 따른 업무활동비이나 사기 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김윤영

V.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소년은 사회정착과정에서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 교육제도의 이질화에 따른 학제차이, 북한체제의 경제난과 탈북과정에서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업손실, 사회주의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경제적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심해 학교생활에 쉽게 동화하지 못하고 무기력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외부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일탈로 이어지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 가장 측근에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며 그들을 후원하고 보호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의 역할이 단순히 그들을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남북한 양 체제는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경험을 다한 이들이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이 사회정착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남남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치안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소식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품고 있던 동경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김윤영·조용관 2009, 6).

동서독의 통일된 힘이 동독탈출 주민들에 대한 서독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탈북청소년들이 건전

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앞서 제언한 탈북청소년 보호 개선 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통계자료나 적용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언론매체나 인터뷰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없어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신변보호경찰관의 실무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보며,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정부당국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탈북청소년들의 실태 자료 확보와 공개로 각론적 차원의 선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오늘도 북한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또는 ‘나 홀로’ 생존과 보다 나은 삶과 희망을 찾아 목숨을 담보로 탈북을 시도하여 국내입국을 꿈꾸고 있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 8, “201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2011.02.,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추진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금명자·권혜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2호, pp. 295-308.
-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 연구』, 제10권 4호, pp. 163-187.
- 김경준·정병호·김찬호,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문수, 2004, “탈북에서 입국까지”, 『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김윤영, 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09a,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09b,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10a,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_____, 2010b,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 _____, 2009,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정현, 2010, “20代 탈북자, 中 해커집단 가담까지… 꿈 찾아 왔는

- 데 지독한 생활고에 범죄 소굴로”, 『국민일보』 (7월 21일).
- 김필재, 2008, “태국 밀입국 탈북자, 3년새 10배 증가”, 『프리즌 뉴스』 (3월 27일).
- 박윤숙, 2009,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담론』, 제3권 2호, pp.1-23.
- 박호성 외, 2005,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안현태, 2011, “탈북주민 함경도 출신 ↓ 양강도 출신 ↑ 왜?”, 『헤럴드 경제』 (9월 11일).
- 이기영, 2000,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통일부.
- 이동직, 2009, “용돈 벌러 性 파는 청소년 크게 늘어”, 『CBS 노컷뉴스』 (1월 29일; <http://www.cbs.co.kr>, 2010/10/01).
- 이우영·이금순·서재진·전현준·최춘흠,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장동수, 2006,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광주: 조선대석사논문.
- 전우택·윤덕용·민성길, 2001, “보호 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2호, pp. 203-216.
- 제성호, 1996,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최승진, 2008,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만 5천명 추산”, 『CBS 노컷뉴스』 (10월 6일).
- 통일부, 2011a,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11b,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 2011/09/02.
- 황진영 외, 2009, “학교중퇴에 자살까지... 탈북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동아일보』 (10월 28일).

A Study on the Protection Measures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by Security Police

Kim, Yun-young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Lee, Sang-won
(Yongin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n in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into South Korea, leading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There were more male refugees than female in the past between the ages of the 20's and 30's, but the ratio of females, adolescences, and elder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ntered into South Korea have suffered severely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ed by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 that occurred during the escape from North Korea, and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settle in South Korea society. In addition they suffer from depression and anxiety du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during the period of adaptation.

One of the reasons of social deviation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after settlement is a failure of understanding domestic circumstances. Solving a settlement problem of those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is not simply a solution of the current problem but is also a way to prevent future

problems by integrating numerous young North Koreans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This is a one indicator for the success of social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urity police has a direct effect in the success of resettlement and has an important role to protect and to assist in the resettlement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adaptation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nd the protection problem from security police. Furthermore, this article suggests improved protective roles and services of the police and the systemization of bodyguard services and protection from the arrival of young North Korean refugees.

This study begins with an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followed by a theoretical background in the second chapter,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third chapter, an improvement of protection for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fourth chapter, and a conclusion in the final chapter.

Keywords : Settlement, Security police, Protection, North Korea, Korea Society, refugees.